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쪽)
■ 国民年金法施行規則 [別紙第25号書式] <改正2021年6月30日> (表面)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国民年金農漁業者確認書					처리기간 処理期間
					3일 3日
농어업인 農漁業者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 国内居所申告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 携帯電話番号		
농어업인 해당일 農漁業者該当日		년 월 일 年 月 日			
농어업인 구분 農漁業者の区分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農業者 (畜産業者、林業者及びその法人従事者を含む) []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 漁業者 (養殖業者及びその法人従事者を含む)			
연간 농어업 판매액 年間の農漁業の販売額		원 ウォン			
연간 농어업 종사일 年間の農漁業従事日		일 日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法人に1年以上雇用されて いる者の雇用日数 ※ 고용된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雇用先の法人が発行した 雇用日数に関する資料を 添付してください。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営農 (営漁) 組合法人に雇用されている者 (農水産物の出荷・流通 加工・輸出活動の従事者のみ) の雇用日数: []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 동 종사자만 해당합니다)의 고용일수: [] 営農 (営漁) 会社法人に雇用されている者 (農水産物の流通・加工 販売活動の従事者のみ) の雇用日数:			
농어업 규모 農漁業の規模		농지 農地	제곱미터, 平方メートル、漁船	톤, 양식 トン、養殖	헥타르 ヘクタール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国民年金法施行令」第57条第4項本文及び同法施行規則第36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者が農漁業者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업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国民年金法施行令」第57条第4項本文及び同法施行規則第36条第2項に基づき、上記の者が農漁業者に該当することを確認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市長・区庁長・邑長・面長・洞長

(인)
(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国民年金公団理事長 殿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留意事項

-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農漁業者確認書は資格取得申告書又は内容変更申告書と共に提出してください。
-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 農漁業者の確認は、土地所在地若しくは居住地の市長・区庁長・邑長・面長若しくは洞長(「地方自治法」第104条に基づき地方自治体の条例若しくは規則によって事務を委任された場合は、委任された機関の長を指す)が行うものとします。ただし、農漁業者の確認を受けたとしても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農漁業者から除外されます。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所得税法」第14条の第2項に基づく総合所得金額から同条第3項各号による所得額を控除した金額が保健福祉部長官が定めて告示する金額を超える者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地方税法」第105条に基づく土地、建築物、住宅、航空機及び船舶の財産税の課税標準の合計額が保健福祉部長官が定めて告示する金額を超える者
- 농어업인의 구분은 다음의 구분표에 따릅니다. 다만, 농업과 어업(양식업을 포함합니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양식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양식업의 종사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農漁業者の区分は以下の表のとおりとします。ただし、農業と漁業(養殖業を含む)とを兼業している場合は、漁業・養殖業の販売額を農業の販売額とみなしてそれを農業の販売額に足して計算し、漁業・養殖業の従事期間の100分の150に該当する期間を農業の従事期間とみなしてそれを農業の従事期間に足して計算します。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農業者(畜産業者、林業者及びその法人の従事者を含む)	어업인(양식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 漁業者(養殖業者及びその法人の従事者を含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千平方メートル以上の農地(「農漁村整備法」第98条に基づき、非農業者が分譲又は賃貸の農漁村住宅等に付属する農地は除く)を経営若しくは耕作する者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農業経営による農産物の年間販売額が120万ウォン以上の者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年間90日以上農業に従事す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6条第1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営農組合法人の農産物の出荷・流通・加工・輸出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9条第1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農業会社法人の農産物の流通・加工・販売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漁業・養殖業経営による水産物の年間販売額が120万ウォン以上の者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年間60日以上漁業・養殖業に従事す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6条第2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営漁組合法人の水産物の出荷・流通・加工・輸出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農漁業経営体の育成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19条第3項に基づき設立された漁業会社法人の水産物の流通・加工・販売活動に1年以上継続して雇用されている者

※ 농업 ※ 農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합니다) 農作物栽培業: 食糧作物栽培業、野菜作物栽培業、果実作物栽培業、花き作物栽培業、特用作物栽培業、薬用作物栽培業、きのこ栽培業、養蚕業及び種子・苗木栽培業(林業用の種子・苗木栽培業は除く)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畜産業: 動物(水生動物は除く)の飼育業・増殖業・孵化業及び種畜業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林業: 育林業(自然休養林・自然樹木園の造成・管理・運営業を含む)、林産物の生産・採取業及び林業用の種子・苗木栽培業 	※ 어업 ※ 漁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水産動植物を捕獲・採取する事業、塩田で海水を蒸発させて塩を生産する事業 ※ 양식업 ※ 養殖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고(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水産動植物を人工的方法で育てて収穫すること(水産種子を生産する行為を含む)を目的として漁船・漁具を使用又は養殖施設を設置・運営する事業
---	--

작성방법

作成方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氏名、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は、住民登録票謄本上の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농어업인 구분"란에는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 「農漁業者の区分」の欄には該当する[]に「√」をつけます。
-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란에는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해당하는 []에 "√"표시를 합니다.
- 「法人に1年以上雇用されている者の雇用日数」の欄は、農漁業関連の組合法人又は会社法人に1年以上雇用されており農業者として認めらることを希望する者の場合、該当する[]に「√」をつけてください。

